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143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유병연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91,359원 및 그 중 2,976,625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20. 1. 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6. 9.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34.89%, 계약만료일 2020.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이를 연체하였다. 이에 D 주식회사는 2016. 7. 13. E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의 2020. 7. 29. 기준 잔액은 6,491,359원(= 원금 2,976,625원 + 이자 및 지연이자 3,514,734원)이다(이하 위 채권을 '제1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F는 2017. 4. 13.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27.9%, 만기일자 2022. 4.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이를 연체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F는 2017. 10.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981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8.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14,917,837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8. 3. 1.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제2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G은 2005.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H, I, J, 피고 B이 있었다. 이후 I은 2011. 12. 12. 사망하였다.

라.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H, J은 2020. 1. 8. H, J, 피고 B(각 상속지분 2/11)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피고 C은 2020.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6,491,359원 및 그 중 원금 2,976,625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 2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1. 충청북도 보은군 대 757㎡

2. 충청북도 보은군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80.82㎡ 끝.

2

